

2016.7.1.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정정지가 결정·공시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6. 7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정정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·공시합니다.

2016. 12. 23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
가. 대 상

1) 2016. 7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: 3필지

[단위:원/㎡]

대 상 토 지		당 초	조 정
법 정 동	지 번		
백 석 동	212-16	90,000	300,000
신 현 동	219	333,400	418,500
심 곡 동	171-29	681,600	631,100

2) 과년도(2014. 1. 1. 기준) 정정지가 : 1필지

[단위:원/㎡]

대상토지		당초지가	조정지가
법 정 동	지 번		
원 창 동	381-36	738,700	771,900

2.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

결정·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(불복)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3. 문의사항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 560-484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